

업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제도 운용 실태

본협회 조사부

최근 많은 기업들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정도 경영', '기업윤리 확립', '공정경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행태에 공정경쟁 문화가 뿌리내리고 기업윤리의 확립으로 우리의 시장경제체제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경영환경에서 성장한 기업이야말로 무한경쟁 시대에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업윤리와 공정경쟁 질서는 타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보다 영구적이고 견고한 기업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 풍토 조성이 더욱 중요

따라서 정부가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공정거래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공

정거래 제도를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풍토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별기업들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자율준수 편람을 기업의 특색에 맞도록 제정·운용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LG그룹과 쌍용건설, 유공, 삼성소비자문화원 등에서 공정거래 준수편람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현대그룹과 미원그룹에서도 조만간 공정거래 준수편람을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은 최근 선진국들의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발을 당할 경우 사업 활동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대기업은 시장지배적인 지위 때문에 같은 거래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비

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 준수편람의 운용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자율공정경쟁코너에서는 향후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율준수편람 제정 연혁과 구성 내용 및 운용 방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다.

자율준수편람 제도(compliance program)는 일종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위험(risk), 예를 들면 법위반에 따른 형벌, 과징금, 손해배상, 회사의 도덕성, 명예의 실추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당수의 법위반 사례가 고의성보다는 법을 잘 모른다거나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관행적·무의식적으로 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정거래 준수편람의

제정 목적은 기업마다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으로는 종업원들의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공정 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 함으로써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자율준수편람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몇 가지 이점이 있는데 이를 예시를 하면 (1) 종업원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보여줄 수 있다. (2) 기업의 준법정신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다. (3) 위법 사건이 있을 경우 사내의 책임부서 소재가 명확해 진다. (4) 종업원간의 의사 전달이 용이해진다. (5) 사내 문제 탐지를 용이하게 한다. (6)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있다.

삼성전자, 쌍용건설, LG그룹 등이 운용

국내기업의 자율준수 편람제도 도입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가 1994년 3월에, 쌍용건설이 1995년 1월에, LG그룹이 1995년 3월에 그리고 삼성소비자문화원이 1995년 10월에 최근 유공이 각각 공정거래 준수편람을 제정, 사내에서 운용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서 발간된 준수편람의 체계를 보면 제목은 기업에 따라 「공정거래법 매뉴얼」「공정거래법 준수편람」 등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LG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매뉴얼」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준수편람」 쌍용건설은 「바람직한 공정거래」 삼성소비자 문화원은 「공정거래 준수편람」 등의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내용은 추상적인 공정거래법을 알기 쉽게 해설하기 위하여 서술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공정거래에 관한 준수사항을 질의응답식(Q&A) 또는 그림을 넣어서 시각적인 효과도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소비자문화원, 쌍용건설의 공정거래 준수편람은 질의응답식으로 되어 있으며, LG그룹의 경우는 서술적으로 되어 있다.

공정거래 준수편람은 대체로 공정거래법에 관한 회사의 기본방침과 공정거래법의 개관,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 개관에는 공정거래 제도의 목적과 규제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조치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가

이드라인에는 관련 법규를 각각 유형별로 나누어 공정거래법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와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에 관련된 국제계약의 심사 요청, 부당한 공동 행위,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 따른 준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에 대해, 약관규제법에서는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약관조항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삼성전자의 준수편람은 총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용어 해설을 제2장에서는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해설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공정거래법과 그에 따른 관련법규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LG그룹의 준수편람은 총4편으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일반론을 다룬 서론편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법해석편, 업무수행시의 처리기준 및 행동지침을 제시한 실무적용편, 업무수행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례를 수록해 놓은 사례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거래 관계법령은 법규집에 별도로 수록해 놓았다.

쌍용건설의 준수편람은 하도

급법상의 준수사항, 쌍용건설의 협력업체 관리현황, 공정거래 관련법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성소비자문화원의 준수편람은 총5편으로 제1편과 제2편에 각각 공정거래제도의 법체계와 공정거래법 해설 및 심결사례, 제3편은 하도급편으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제4편에 약관규제법상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구체적인 사례, 제5편에 각종 공정거래 관련 서식과 시행세칙들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준수편람은 실무적으로 관계가 가장 많은 ‘영업’ 및 ‘구매’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핸드북 형식의 가이드북을 별도로 첨부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쌍용건설의 준수편람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편람중 업종의 특성을 살려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하도급법의 규정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림과 함께 간편하게 만들어진 준수편람이다. LG그룹의 준수편람은 업무매뉴얼과 법규집으로 분리,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의 내용 해설은 업무매뉴얼에, 공정거래관련법 규는 별도의 법규집에 수록되어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곧 총체적인 관리 체계

공정거래 준수편람의 작성 운용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개별회사가 공정거래법에 대한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사내 종합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1) 회사의 공정거래법 준수사항 (2) 종업원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준수편람 작성 (3) 종업원에 대한 공정거래법 교육 (4) 공정거래법 준수사항 점검 및 종업원의 의문에 대한 회답 체제 구축 (5) 법령의 개정,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과 장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재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체제 구축까지 포함되는 총체적인 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LG그룹은 자율준수편람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선 지원·육성 프로그램 및 진단·평가 프로그램이 동내용이다.

쌍용건설은 준수편람을 전 현장과 협력업체에 배포하고 하도급 공정거래의 지침으로

회사의 업무분장 내에 공정거래 및 건설관련법규 준수 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삼성소비자문화원은 준수편람을 그룹내의 모든 계열회사에 배포, 이를 교재로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기업은 공정거래 준수편람을 공정거래 질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자율준수편람은 특정 기업이나 거래 행태에 구분없이 모두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종업원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서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좀더 실효성 있는 자율준수편람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준수편람을 전사원에게 배부하여 이해를 촉진시킴은 물론 사례와 판례의 축적으로 편람의 체계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업종, 경영방침, 거래 행태의 특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실효성 있는 편람이 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